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15

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조계원·박수현·양문석

박지원 • 민형배 • 윤준병

김윤덕 · 김문수 · 민병덕

이광희 · 양부남 · 김현정

임오경 · 김우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본문 중 "대통령이"를 "대통령(「대한민국헌법」 제71조 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은 제외한다)이"로 한다.

제26조제1항 단서 중 "대통령이"를 "대통령(「대한민국헌법」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은 제외한다)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공기업 임원의 임면) ①	제25조(공기업 임원의 임면) ① -
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	
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	
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가 복	
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	
심의・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	
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	
<u>대통령이</u> 임명한다. 다만, 기관	대통령(「대한민국헌법」 제71
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은
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	<u>제외한다)이</u>
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	
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	
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	
장이 임명한다.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	제26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
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	①
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	
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	
명한다. 다만, 기관 규모가 대	,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	

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 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
② ~ ⑦ (생 략)